

**강원도 중소기업 수출활성화를 위한
강원도-강원지방우정청-강원도경제진흥원 상생 협력 업무협약서**

강원도와 강원지방우정청, 강원도경제진흥원(이하‘협력기관’)은 상호교류를 통한 강원도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(이하‘본 협약’)을 체결한다.

제 1 조 (목적) 본 협약은 협약기관 간 상호협력을 통한 강원도 지역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협력내용) 본 협약에 의한 협력 내용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.

1. 강원도 중소기업의 수출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협력한다.
2. 강원도의 중소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한다.

제 3 조 (협약내용의 이행) 협약기관은 보다 구체적인 협력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상호 신뢰와 신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의하여 정한다.

제 4 조 (비밀유지) 협약기관은 상호협력 과정을 통하여 인지한 상대기관의 업무 내용이나 이에 관련된 비밀을 요하는 사항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된다.

제 5 조 (효력발생)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기관 대표가 협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며, 어느 한쪽으로부터 본 협약의 해지에 관한 서면 통보가 없는 한 계속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.

제 6 조 (기타)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협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상호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.

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고 협약기관 대표가 서명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8년 4월 2일



강원도 글로벌투자통상국

국장 전 홍 진



**강원지방우정청
우정사업국**

국장 김 영 식



강원도경제진흥원

원장 서 동 엽